금주의 법구-〈법구경〉
한 그루의 나무를 자르지 말고
욕망의 숲 전체를 잘라라.
욕망에서 벗어난 자가 돼라.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395호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불기 2566년 음력 6월 15일) 2022년 7월 13일 수요일



홍법사서 만난 인류무형유산 '몽골 나담축제' 몽골의 최대 전통축제인 '나담축제'가 부산 홍법사에서 열렸다. 부산 홍법사(주지 심산)는 7월 3일 경내에서 '제11회 부산 몽골 나담축제 2022'를 개최했다. 나담축제는 몽골 혁명 기념일인 7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 동안 몽골 전역에서 열리는 몽골의 최대 전통축제로 씨름 말타기 활쏘기 등 세 가지 전통 경기가 주를 이루며, 2010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조계종단 총림 요건 완화
원로의장 '3년 단임' 추진

중앙종회 제225회 임시회 논의안건은

7월 19일 개원 예정인 조계종 제225회 임시회에서 원로의장 임기를 5년에서 3년으로 감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종헌 개정안과 총림 구성요건을 현실에 맞게 완화한 개정안이 입법발의될 예정이다.

조계종 원로회의(의장 대원)는 7월 6일 제6차 회의를 열고 원로회의 의장·부의장 임기를 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종헌 개정안 발의를 추진키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의장 궐위시 보궐선출 및 잔여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원로회의법 개정도 추진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원로의원 권한에 대한 조정안도 논의됐다. 원로의원들의 다양한 경륜과 지혜가 종무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다. 원로회의는 현재 2급 이상 법계 심의권을 '대종사 법계 심의권'으로 개정하고 '중앙종회에서 부의한 종단 주요종책의 조정권'에 심의권을 추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의결했다. 또 원로회의는 기타안건으로 종단 화합을 위한 멸빈자 사면 건의의 건을 상정했지만, 논의 끝에 차기로 이월키로 했다.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인사말에서 "제36대 대한불교조계종 집행부의 마지막 해"라며 "지난 4년은 중앙종무기관 종무원들이 한결같은 자세로 종단의 안정과 승가의 화합을 위해 매진했던 시간으로, 백만원력결집불사의 성과도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스님은 "이 모든 것은 항상 종단을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시는 종정예하와 원로스님들의 덕화속에 가능했던 불사"라며 "종단은 사부대중의 마음이 모아져 안정되고 승가는 종정예하를 중심으로 화합하여 승가 공동체를 굳건히 하고 있다. 앞으로도 소납을 비롯한 사부대중은 종단이 신뢰받고 화합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어 조계종 중앙종회 종헌개정·종법 제개정특별위원회(위원장 호산)는 7월 7일 제8차 회의를 열고 총림 구성요건을 현실에 맞게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종헌개정안·총림법 개정안을 성안했다. 개정안은 출가자 감소로 인해 인원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상황을 반영해, 현행법 상 선원·승가대학·율원·염불원 등 4개 교육기관을 의무적으로 운영토록 한 총림 구성요건을 3개 기관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애초 특위는 총림법 개정을 통해 이를 추진할 계획이었지만, 총림 지정 및 해제에 대한 자격요건을 완화한다는 입법취지를 근본적으로 반영하는 취지에서 종헌개정안을 함께 상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특위는 총림 요건으로 4개 이상을 의무화한 종헌 103조를 "총림은 선원, 승가대학(강원) 또는 승가대학원, 율원 또는 율학승가대학원, 염불원 가운데 선원을 포함한 3개 이상의 수행기관을 두어야 한다"로 변경하고, 연관법으로 총림법 2조 2조에 이를 반영키로 했다.

총림의 방장 자격기준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행 총림법은 "선·교·율을 겸비한 승랍 40년 이상의 비구로, 20안거 이상을 성만한 본분종사"로 명시돼 있다. 특위는 신설조항으로 "총무원장, 중앙종회의장, 호계원장을 4년 이상 재직

원로회의, 7월 6일 회의 결과
종헌개정안 발의 추진 결의해
종헌특위, 총림요건 완화취지
종헌·총림법 개정안 입법발의

한 자로서, 전문선원에서 8안거 이상 성만한 이력이 있는 자"를 추가키로 했다.

이런 가운데 총림 구성요건 완화를 골자로 한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7대 총림의 실질적인 어려움은 일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9년 중앙종회가 총림실사특별위원회 실사를 통해 총림 실태를 조사한 결과 당시 8대 총림 가운데 선원과 강원, 율원, 염불원 4곳을 모두 갖춘 곳은 영축총림 통도사가 유일했다. 해인사와 송광사, 백양사, 동화사, 범어사, 쌍계사는 염불원을 갖추지 못했고 수덕사는 율원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는 등 학인 충원에 어려움이 적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고불총림 백양사의 경우 총림 구성요건을 수년간 충족하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제217회 정기회에서 총림 지정해제라는 초유의 사태를 빚기도 했다.

송지희 기자

신성민 기자의 기획연재 · 15면
다시 돌아와야 할 성보들 ① 흥천사 동종

선암사 항소심 태고종 승소…논란 여전히

조계종 · 태고종 선암사 소유권 분쟁 향방은

광주고법, 7일 등기말소 소송서
조계종 선암사 당사자적격 부정
'각하' 결정…"등기말소 이행하라"
태고종 승소에도 법리 논란 '여전'
조계종 선암사 항소 가능성 높아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순천 선암사를 두고 조계종과 태고종 간 수년째 지속되고 있는 소유권 분쟁과 관련, 핵심소송으로 주목받았던 '등기명의인 표시변경 등기 말소소송'에서 태고종이 승소했다. 이 같은 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논란은 여전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가 피고 조계종 선암사의 당사자적격을 부정해 '각하' 결정을 내리면서, 내용적으로는 태고종 선암사의 승소지만 법리적으로는 또 다른 논란이 예상돼 귀추가 주목된다.

광주고등법원 제1-2민사부는 7월 7일 태고종 선암사가 조계종 선암사를 상대로 제기한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말소' 소송에서 '각하' 결정을 내렸다. 조계종 선암사는 실체가 없으므로 당사자적격이 없다는 취지에서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등기의 실제 이행자인 윤선웅(조계종 선암사 4대 주지, 예비적 피고인)에 대해 조계종 선암사 등기 말소 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다. 소송비용은 원고(태고종) 측이 부담토록 했다.

이번 판결은 당사자 적격 부분에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의 원심과도 대치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앞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원심 판결에서 조계종 선암사가 태고종에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판결하고, 예비적 피고인 윤선웅 씨에 대해서는 당사자 자격 부존재를 이유로 각하한 바 있다.

조계종과 태고종 측은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이다. 태고종 측은 '조계종 선암사' 등기행위의 부당성을 법원으로부터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사실상 소유권 분쟁의 종식을 예견하는 분위기다. 특히 재판부가 이번 판결에서 '조계종 선암사' 등기행위자에게 등기말소 이행을 결정한 것은, 사실상 태고종 측의 소유권을 완전히 인정하는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태고종 관계자는 환영의 뜻과 함께 "가까운 시일 내에 태고종의 입장을 공식 표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반면 조계종 측은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판결문을 검토해야 명확한 입장을 밝히겠지만, 법리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지점이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조계종은 그동안 선암사 소송과 관련, 재판부에 "한국불교 역사와 정체성을 지켜달라"고 요청해 왔다는 점에서, 항소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판결로 인해 다른 논란이 야기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등기행위자인 윤선웅 씨가 소송 당사자가 아닌 예비적 피고인데다, 이미 원심 판결에서 "예비적 피고는 등기의무자가 아닌 자에 대한 것으로 당사자 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부적법한 소"로 각하된 바 있다는 점 때문이다.

이와 관련 이번 재판을 참관한 조계종 측 법률대리인은 "원심 판결에서 법원은 이미 예비적 피고 윤선웅 씨에 대한 태고종 측 주장을 각하했고, 이에 대한 항소는 없었기 때문에 확정된 것"이라며 "판결문을 확인해야 명확해 지겠지만, 원론적으로 윤선웅 씨에게 말소등기를 이행하라는 판결 자체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재판부가 각하의 이유로 조계종 선암사의 실체가 부정된데 따른 판단도 엇갈린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법당의 존재여부와 승려·신도·규약의 존재, 사회적 실체로서의 활동여부가 기준이 되는데, 이에 따르면 현재 조계종 선암사는 실체적 요건을 갖춘 상태다.

이와 관련 조계종 선암사는 △선암사가 일제강점기 '조선불교' 소속 사찰이었던 점 △1962년 불교재산관리법 시행에 따라 통합종단 조계종 소속 사찰로 등록한 점 △1962년부터 조계종이 주지를 임명해 선암사를 관리·감독했고 조계종선암사가 사찰재산 관리와 종교의식을 진행해 온 점 △1970년 창종한 태고종이 선암사를 무단으로 점거해 왔다는 점 등을 주장해 왔다.

반면, 태고종 선암사는 △선암사를 태고종 소속 사찰로 점유·사용해 온 점 △선암사가 조계종에 가입한 바 없다는 점 △선암사의 각 부동산은 태고종 선암사가 사정받은 토지 혹은 태고종 선암사가 신축한 건물이라는 점 등을 근거로 제시해 왔다.

이런 가운데 조계종·태고종간 선암사 소유권 분쟁을 가름할 또 다른 소송인 '선암사야생차체험관철거소송'의 파기환송심 선고가 7월 20일 예정됐다. 따라서 이번 판결의 여파가 어떤 형태로 소유권 분쟁에 영향을 미칠지에 관심이 주목된다. **(차주 상보)**

백만원력 결집불사
희망의 불교,
미래의 불교를 함께 열어갑시다.

백만원력 결집불사

- 인도 부다가야 한국사찰 분황사 준공
- 육·해·공군본부 계룡대 호국 홍제사 건립
- 불교요양원 건립
- 경주남산 열암곡 마애부처님 바로 모시기
- 세종시 광제사 및 한국불교문화체험관 건립
- 불교문화유산보존센터 건립
- 10.27법난 명예회복을 위한 기념관 건립
- 조계종 총본산 성역화 불사 기금 조성
- 위례 상월선원 신축불사
- 나눔 및 교육기금 조성

대한불교조계종



● 인도 부다가야 한국사찰 분황사 준공
● 육·해·공군본부 계룡대 호국 홍제사 건립
● 세종시 광제사 및 한국불교문화체험관 건립
● 경주남산 열암곡 마애부처님 바로 모시기

모연동참안내

백만원력결집불사, 대한불교조계종 검색
NAVER Daum
www.buddhism.or.kr

▶매일 발우저금통에 보시
▶정기후원(CMS) : 신청서 또는 전화신청
▶후원계좌 예금주 : 재)아름다운동행(백만원력결집)
농 협 301-0248-0882-41
국민은행 008601-04-152458
우 체 국 010579-01-005480
▶ARS 060-700-0012(한통화 3,000원)
▶문의전화 02)6273-0108, 0109

• 모아진 발우저금통은 재적사찰 또는 문의전화로 상담해주세요.
• 재)아름다운동행은 대한불교조계종에서 설립한 기부재단으로 백만원력결집 공식 모금창구입니다.